



# 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축산농가 자가진단용 적정 사육면적계산기 활용 홍보·안내 요청

1. 관련 :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-1374('20.3.20.)호.
2. 축산업 허가(등록)를 받은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상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가 지속 추출되고 있습니다.
3. 우리부에서는 축산농가가 실제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적정 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'적정 사육면적 계산기'를 개발('20.3월), 보완('21.4월)하였습니다.

\*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(www.mtrace.god.kr)의 '적정 사육면적 계산기' 접속

4. 시도(시군), 축산단체·농협경제지주에서는 축산농가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배너 및 링크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농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관리처 과장 이민아(044-410-7743 ) 문의

- 붙임 1.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활용 방법 1부  
2. 배너 이미지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전국 시도 및 시군구, 축산물품질평가원, 축산환경관리원, 농협경제지주, 축산관련단체



주무관 **천행수** 사무관 **문원탁** 축산정책과장 **박정훈** 전결 2021. 4. 29.

협조자

시행 축산정책과-2144 (2021. 4. 29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(어진동) / http:/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2330 팩스번호 044-868-3966 / jsan506@korea.kr / 대국민 공개